

서울특별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00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10월 16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운영 위탁사무는 「아동복지법」 제38조 및 제40조에 근거하여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
- 나.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(예정) 아동의 자립 프로그램 운영 및 통합적 자립 지원서비스 제공, 종사자 교육, 자원 연계 등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기관에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운영

나. 근거 및 필요성

- 추진근거 :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- 위탁 필요성 : 수탁기관의 축적된 전문지식과 운영 방식을 토대로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통합적 자립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아동의 자립 기반 마련에 대한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

다. 위탁사무 내용

-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
- 자립에 필요한 주거·생활·교육·취업 등 지원
-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
-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-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자립지원교육
-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
-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등

라. 위탁기간 : 3년(2021.1.1. ~ 2023.12.31.)

마.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재계약

바. 소요예산

- 소요예산 : 450,306천원('21년 예산요구액 기준, 청년자율예산 포함)
- 산출근거 : 인건비 245,595천원, 운영비 34,205천원, 사업비 170,506천원

사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○ 아동복지법

제38조(자립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.

1. 자립에 필요한 주거·생활·교육·취업 등의 지원
2.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(이하 "자산형성지원"이라 한다)
3.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
4.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
5.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,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0조(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,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,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2021년도 예산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오은희 (☎ 2133-5195)